

내부정보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공시 담당 조직 및 운영

제 3 장 중요 정보의 발생 및 관리

제 4 장 중요 정보의 공개

제 5 장 당사 주식 등의 매매

제 6 장 IR 활동

제 7 장 기 타

제 8 장 보 칙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중요 내부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적법하게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며 회사 외부로 공정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내부정보의 관리와 내부자 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당사의 윤리규정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당사의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직원과 고문, 자문위원, 대리인, 파견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회사의 중요정보를 증권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언론기관에 공표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등 회사 외부의 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주식 등'이라 함은 주권, 전환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5. '내부자 거래'라 함은 임직원이 회사 및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후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식 등을 매매나 기타 거래하거나 타인이 이를 이용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IR 활동'이라 함은 주주 및 잠재주주와 주주총회, 실적발표, 투자자 미팅, 전화 및 e-mail 문의 대응 등을 통해 접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IR 활동 조직'은 IR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와 해당 부문의 장 그리고 대표이사를 말한다.

제 2 장 공시 담당 조직 및 운영

제 4 조(공시담당 부서)

- ① 대표이사는 중요 정보의 종합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공시업무 주관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1 인의 공시책임자와 1 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증권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 5 조(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직무 등)

- ① 공시책임자는 등기임원 중 1 명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상근이사 중 1 명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토록 위임할 수 있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개정이나 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 변경내용을 소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신고 또는 공시 임무를 담당한다.
- ④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법인공시규정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 조(소관부서)

- ① 중요정보의 소관부서는 중요정보 관련 업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부서로서 중요정보의 발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에 관한 발의, 검토,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 이사회 결의 등 중요정보의 생성에서 공개 전까지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정보의 공개를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 또는 검토하여 언론 등에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홍보업무를 맡은 조직을 해당정보의 소관부서로 본다.

제 3 장 중요 정보의 발생 및 관리

제 7 조(중요정보의 발생)

- ① 중요정보는 별표 [공시사항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해당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②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그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소집시에 그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중요정보의 유출방지)

- ① 소관부서 및 당해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당사의 중요정보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공시책임자의 결정이 없었음에도 IR 또는 홍보 활동을 위해 소관부서가 임의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는 직무상 필요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단, 소관부서는 공시담당 조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중요정보를 공개 이전이라도 제공해야만 한다

제 9 조(중요정보 관련 업무의 비밀유지)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 외부의 자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 제휴, 업무협약, 자문 등의 업무협력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등 중요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중요 정보의 공개

제 10 조(중요정보의 공개)

- ① 중요정보의 공개는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결정하여 행한다.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중요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공시책임자는 공개할 정보가 수시공시 또는 자진공시 등 법정 공시사항일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공정공시 등)

- ① 공시책임자는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는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투자자 미팅,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요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대상정보 및 제공대상자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시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정보제공 요청 등)

①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중요정보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정보제공 요청 및 처리 내용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당사 주식 등의 매매

제 13 조(주식 등의 거래 금지)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01 조에 의해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의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미공개내부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로 보는 기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01 조 (정보의 공개) 법 제 17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 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 공개된 때부터 3 시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 시부터 6 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 시간으로 한다.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 방송된 때부터 6 시간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 제공된 때부터 6 시간

제 14 조(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 주식 등의 거래)

- ①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공시업무주관부서 직원, 또는 중요정보 소관부서 직원 등이 제 13 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보유 및 공개유무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 13 조에 해당하는 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임원의 당사 주식 등의 거래 보고)

- ① 등기임원이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3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임원 등이 행한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 173 조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지분변동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자본시장법

제 147 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 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 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73 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 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83 조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상황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IR 활동

제 16 조(IR 활동시의 정보 제공)

- ① IR 활동조직이 소관부서에서 제공받아 외부로 전달하는 정보는 공개된 중요정보 또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외의 정보에 한한다. 단, 실적발표 등과 같이 IR 전담부서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IR 전담부서를 소관부서로 본다.
- ② 향후 예측치나 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예측정보라는 것, 예측에 사용된 가정 또는 전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위험이 있음을 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알려야 한다.
- ③ 임직원이 IR 활동 조직의 요구에 응한 때 외에 IR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사전에 IR 전담 부서에 알리고 제공대상 정보의 범위와 내용 등이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투자자 미팅 등)

- ① IR 전담부서는 미팅의 요청과 그에 대한 수락 및 거절의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자에 알리고 공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 ② 증권회사(애널리스트 등)의 미팅 요청에 대하여 해당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추천의견과 목표가를 이유로 미팅의 기회나 경영진에의 접근가능성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질과 범위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애널리스트 리포트)

- ① IR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거래관계에 대하여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내용, 추천의견 또는 목표가를 이유로 해당 증권사에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②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 배포하기 전에 회사에 내용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실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는 오류를 정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애널리스트 고유의 판단에 대해서 부당한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 7 장 기 타

제 19 조(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내부 중요정보 등)

-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이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공개전에는 당해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이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내공시규정'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교육)

- ① 공시책임자 및 소관부서의 장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중요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 관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징계)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나 상벌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2 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3 조(세부사항)

[공시사항 체크리스트] 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시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